

# 전문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16. 2. 24.

**제 1 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장애인럭비협회(이하 “장애인럭비협회”라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전문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목적)** 정관 제7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 하고 이사회에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대표 경기력향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올림픽, 농아인올림픽,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강화훈련에 관한 사항
3. 스포츠과학의 연구 지원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
4. 경기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국가대표선수 훈련 참가 임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6. 국가대표 훈련의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7. 우수소질 보유자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8. 가맹단체 육성, 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9. 전임지도자 운영, 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10. 실업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11. 기타 전문체육 발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제 4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1~3인
3. 위원 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장애인럭비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 5 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정관 제25조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 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등록선수 및 현직 지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6 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7 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9 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운영)**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된 기능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비상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 5인 이내로 한다.

**제13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 처리는 장애인력비협회 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4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부 칙(16. 2. 24.)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위원회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최초 적용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2017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

**제 3 조(강화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강화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되고 이 규정에 의한다.